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시 : 2003. 10. 남은기 위원장의 3인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0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이 선 의원

나. 제안사유

-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함.

다. 주요내용

-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안 제2조제1항)
- '우수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안 제2조제2항)

-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안 제3조제1항)
-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3조제2항)
- 지원대상은 화순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안 제8조)
-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학교급식의 비리와 식중독등의 발생을 예방하여 자녀들에게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급번 “우수농수산물”의 표기로 변경하였기 세계무역협정에 위반된다든가 통상마찰 운운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한끼 먹는 문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우수농수산물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농어촌 희생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농산물을 공급키 위하여 조례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으므로 관심을 갖아줘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상상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③‘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를 말한다.

④‘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화순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광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화순교육청 관련 과장
3. 군의원
4. 학부모단체
5. 농민단체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